

광주지방법원 2024. 5. 29 선고 2023나827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## 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4. 5. 29 선고 2023나82796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3. 7. 12 선고 2022가단503448 판결

## 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

담당변호사 심형섭, 정경준

피고, 항소인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

변론종결 2024. 5. 1.

판결선고 2024. 5. 29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. 7. 12. 선고 2022가단503448 판결

## 주문

-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-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각 각하한다.

3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# 1. 청구취지

가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2. 7.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190,308,8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190,308,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(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).

##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### 이 유

#### 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# 2.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1) 피고의 본안전 항변

원고는 2017. 9. 22. 이 사건 제1, 2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 사건 제1, 2부동산의 소유권이 2017. 3. 6. 피고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과 C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7. 9. 22.부터 1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.

## 2) 본안전 항변에 대한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7. 9. 22. C이 이 사건 제1, 2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고, 2022. 1. I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, 2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제1,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되었다.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## 나. 판단

### 1) 관련 법리

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,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,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,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(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).

### 2) 구체적 판단

가) 갑 제16 내지 18호증, 을 제9,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.

(1) C은 2017. 5. 10. 이전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,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인

2017. 7. 6.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.

(2) 원고의 독촉 담당 직원은 2017. 5. 22.부터 2017. 10. 26.까지 20회에 걸쳐 C의 휴대폰, 자택, 직장(피고 회사)으로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는데, 그 중 통화내용란에 메모가 기재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| 날짜            | 독촉대상        | 독촉지   | 통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7. 5. 23.  | 본인-<br>직장동료 | 직장    | 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7. 5. 31   | 본인          | 임시    | J대출 등기부확인, B(피고) 200111/여신<br>관리메모 관리자 임시번호 했으나 미수<br>신, 문자발송/소유권리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7. 6. 1.   | 본인 - 기타     | 임시    | 전화연결- 메모남김: 등기부등본 열람(소<br>유자 피고 200111/ 관리자 K 부장과 통<br>화, 물건지 매매했다 하심, 이제 관리자<br>아니라 함 - 승인요청 |
| 2017. 9. 22.  | 본인          | 이동전화기 | 대출서류 L센터로 이전 및 만기경과로 대<br>출금상환 가능여부 확인차 TM, 핸드폰<br>전화 안 받음, 호출 및 SMS 발송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7. 10. 26. | 본인          | 자택    | B(피고)의 임원으로 13억 원 횡령하여 고<br>소장 접수 상태이며 현재 행불상태임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(3) 원고는 2017. 7. 27. 이 사건 대출 당시 C의 주소지 부동산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고, 2017. 9. 22. 이 사건 제1, 3부동산과 매출채권, C의 가족과 C의 주민등록지 소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다.

(4) 원고의 직원은 2017. 11. 9.경 내부적으로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대손상각 신청하였는데, 그 신청서에는 C에 대한 재산조사내역 및 (2)의 독촉 내역이 포함된

‘여신사후관리종합기록부’, 이 사건 제1, 2, 3부동산과 C의 가족 및 C의 주민등록지 소재 부동산의 각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었다. 원고는 2017. 12. 27.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승인하고,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시켰다.

나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 내부적으로 대손상각신청서가 접수된 2017. 11. 9.경에는 원고의

채권추심 담당자가 이 사건 제1, 2, 3부동산이 2017. 2. 7.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, C이 피고의 돈 13억 원을 횡령하고 퇴사한 후 잠적하였는데 잠적 전인 2017. 3. 7. 피고에게 이 사건 제1, 2, 3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사실, C에게 이 사건 제1, 2, 3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, 원고는 그 무렵 C의 범죄행위 및 피고에 대한 거액의 채무 부담 사실,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1,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.

다) 따라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던 2017. 11. 9.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인 2022. 1. 26.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전부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,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.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남수진, 판사 이미주, 판사 김연경

별지